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1조제8항에 근거하여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범위) 학·석사 연계과정 개설을 희망하는 석사학위과정의 학과를 대상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을 시행한다.

제3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5년(학사학위과정이 5년제인 경우 6.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또는 5년)
2. 석사학위과정: 1.5년

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학기 또는 7학기(5년제는 8학기 또는 9학기)이수 중인 자로서 대학원 취득학점 6학점 이외에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2.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학과는 학부과정의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및 관련 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 ③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 지원서 1부
2.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면학계획서 1부

제6조(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서, 면학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제7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에 한한다.

-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 ③ 모집요강은 매 학기 공고한다.

제8조(교과목이수 및 학점인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속 학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일반대학원 전공교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학부에서 이수한 대학원 전공교과목은 대학원 입학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입학자격)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의 대학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은 학부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 없이 학부 졸업
2.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후 학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일반대학원 전공교과목 6학점 이수

제10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학·석사 연계과정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1. 제9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 2. 대학원 신입학 등록 전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 3. 대학원 신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11조(준용규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 학부 재학 중에는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 「규정류 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규정류'로 제정되었음

<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

- 1.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내규는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내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개정내규는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